

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심 사 보 고 서

2021. 4. 23.

복지문화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- 제 출 자: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(문화체육관광과장)
- 제출일자: 2021. 4. 8.
- 회부일자: 2021. 4. 9.
- 상정 및 의결: 제27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(2021. 4. 23.)

2. 제안이유

- 그동안 달서구민의 문화향유와 지역 문화예술 진흥발전에 크게 기여하고,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시설인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1. 6. 30.로 만료예정임에 따라,
-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기하고, 예술향기 가득하고 생활문화가 만개하는 명품공간으로 조성하고자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」 제3조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의2,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웃는얼굴아트센터와 달서생활문화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달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시설개요

시설명	소재지	시설규모 및 주요시설
웃는얼굴아트센터 (장기동)	문화회관길 160 (장기동)	· 시설규모: 지상 3층, 연면적 8,595m ² · 주요시설: 공연장, 전시실, 문화강좌실, 도서실, 수영장 등
달서생활문화센터 (장기점)	문화회관길 160 (장기동, 웃는얼굴아트센터 내)	· 시설규모: 지상 1층, 연면적 635m ² · 주요시설: 동아리방, 북카페, 작은전시장 등
달서생활문화센터 (송현점)	앞산순환로 248 (송현동)	· 시설규모: 지상 1층, 연면적 366m ² · 주요시설: 동아리방, 다목적홀, 공작소 등

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: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
- 수탁자 선정방법: (재)달서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
※ 수탁기관심사위원회 적격심사 후 수의계약
- 위탁사무
 - 시설 내·외의 건물, 부지, 부속시설물, 장비 및 물품 일체
 - 시설 내·외의 건물, 부지, 부속시설물, 장비 및 물품의 유지관리
 - 시설 운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에 관한 사항
 - 시설 이용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
 - 시설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
 - 구립예술단체, 문화예술단체의 활동지원 및 운영 등 기타 위탁자가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

- 본 의안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라 웃는얼굴아트센터 및 달서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위탁에 대해 의회로부터 사전 동의(同意)를 구하고자 집행부가 제출한 동의안.
- 동의안에 대해 의회는 가부(可否)만, 즉 동의 또는 부동의만 의결할

수 있고 제출된 동의안을 수정하여 의결(동의)할 수는 없음.

□ 동의안 내용 중, [수탁자 선정방법: (재)달서문화재단과의 수의계약]에 대해

- 수의계약은 결국 공개경쟁 절차를 생략(배제)하겠다는 것. 다음 2가지 관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.

1) 현행 조례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가?

- 공개경쟁을 배제한다는 것은 지난 2월, 집행부도 수용하여 시행 중인 현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웃는얼굴아트센터 운영 조례」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집행부 스스로 조례를 위반하는 상황이 발생.

2021. 2. 개정 전 아트센터 조례	2021. 2. 개정 후 아트센터 조례
제3조(운영 등) ⑤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 …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(이하 “위탁조례”라 한다)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.	제3조(운영 등) ① 아트센터와 생활문화센터는 … 다만, 구청장은 …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「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(이하 “위탁조례”라 한다)」에 따라 시설 관리 · 운영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
- 따라서 동의안 제출 근거 조례인 「아트센터 조례 규정(수의계약 할 수 없다)」와 달리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동의안을 집행부가 제출하려면 동의안 제출보다 「아트센터 조례」를 재개정(수의계약 할 수 있다)하여 현행 조례를 위반하는 현 상황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2) 어떤 경우에 공개경쟁 배제(수의계약)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는가?

- 법제처 의견에 따르면, “~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정 기관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려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민간위탁조례에서 정한 공개모집 원칙을 배제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야 할 것”임.

- 개정 전 달서구 아트센터 조례에는 “~민간위탁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하고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에~ 위탁할 수 있다.”는 특별한 규정이 있었으나, 개정 후 현행 조례는 동 특별 규정을 삭제한 바, 따라서 문화재단에 위탁하려면 수의계약이 아니라 공개모집 절차를 밟아야 함.

○ 결국 집행부 제출 금번 동의안(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가능하다)은 위 법제처 의견조차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, 이에 대한 집행부 입장도 재확인한 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동의안 처리 여부를 결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

5. 질의 · 답변 및 토론 요지

수의계약에 의해 달서문화재단을 웃는얼굴아트센터 수탁자로 선정함에 대해 표결 결과 【동의한다(4명) · 동의하지 않는다(3명)】로, 과반수 의결에 따라 원안가결함.

6. 심사결과: 원안가결